

##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삼척시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신소득팀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4월 24일

삼척시장

### 1. 채용분야 및 인원

채용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	근무처
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(원덕) 운영지원	1명	○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지원 - 유용미생물 실험·분석 - 유용미생물 생산·공급 업무 - 유용미생물 배양설비 및 시설물 운영관리 - 미세조류(클로렐라) 생산·공급 업무 ○ 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업무	농업기술센터(미래농업과 신소득팀)

### 2. 응시자격

- 가. 지역제한 : 공고일 전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척시로 되어 있는 사람
- 나. 성별제한 : 제한없음(단, 남성은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)
- 다. 응시연령 :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
- 라. 응시제한 : 전염병, 질병 등 업무수행에 곤란함이 있는 자, 상용 또는 기간제근로자(일용인부 포함)로 근무하면서 근무불성실자로 통보를 받았거나 해고된 사실이 있는 자
- 마. 우대조건 : 서류심사 기준표 참고
- 바. 같은 기간 공고되는 타 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중복접수 불가
- 사. 같이 공고된 타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중복 접수 불가
- 아. 「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

## 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4조(채용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3. 근로조건 및 보수

가. 근무기간 :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6개월

※ 근로계약일로부터 6개월 근무 후 근무성적에 따라 정규직(공무원) 전환 가능

나. 근무조건 : 주 5일, 1일 8시간(09:00 ~ 18:00)

※ 현장상황 및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변경될 수 있음

다. 보 수 : 기본급 2,065천원 / 정액급식비 100천원 / 명절휴가비 500천원

※ 4대보험 의무 가입(본인부담금 공제 후 급여 지급)

라.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「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등에 따름

## 4. 원서교부 및 접수

가. 원서교부 : 삼척시청 홈페이지 고시/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
나. 접수기간 : '23. 4. 24(월) ~ '23. 4. 30.(일) 18:00 접수분까지 유효

다. 접수방법 : 방문, 우편접수, 전자접수(이메일 : wjdtkdrbs@korea.kr)

라. 접수장소 :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총무과(후생복지)

※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

※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
※ 전자접수의 경우 접수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

## 5. 제출서류

- 가. 응시원서 [별지 제1호 서식] ..... 1부
- 나. 이력서 [별지 제2호 서식] ..... 1부
- 다. 자기소개서 [별지 제3호 서식] ..... 1부
- 라.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[별지 제4호 서식] ..... 1부
- 마. 주민등록초본 (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포함) ..... 1부
- 바.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 ..... 각 1부
- 사. 최종학력 졸업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..... 1부
- 아. 기타 서류심사 관련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 ..... 각 1부
- 자. 건강진단서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(최종합격자) ..... 각 1부

※ 공고일부터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

## 6. 선발절차 및 합격자 결정

### 가. 1차 심사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등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2차 심사 응시 적격자 선발
  - ※ 1차 서류심사 기준 : 서류심사 기준표 참조
  - ⇒ 서류심사 기준표 적용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임
  - ※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표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
  - ※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(1회)하며, 선발일정은 재공고기간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`23. 5. 4.(목) 예정
  - ※ 시청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공고 (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지)

### 나. 2차 심사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- 일시/장소 : `23. 5. 9.(화) 예정, 장소 미정
  - ※ 면접일정은 인원수, 면접장 마련 등 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변경될 수 있음
  - ※ 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## 다.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통지

○ 일시 : '23. 5. 11.(목) 예정

※ 면접 등 앞선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※ 시청 홈페이지 합격자 명단 공고

## 7. 유의사항 및 기타

- 가.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나. 응시 희망자는 자격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다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라. 최종선발은 신원조회, 범죄경력 조회 및 건강검진(채용 신체검사)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시 합격 취소 후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마.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.
- 바.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반환합니다. 다만,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라 면접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합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총무과 후생복지팀(☎ 033-570-3703) 또는 미래농업과 신소득팀(☎ 033-570-458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 삼척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채점기준표

□ 유용미생물배양지원센터 운영지원

선발기준	판단기준		배점	비고
합 계			100	
삼척시 주민등록 기간 (30점)	10년 이상		30	주민등록초본
	7년 이상 10년 미만		25	
	5년 이상 7년 미만		20	
	3년 이상 5년 미만		10	
	3년 미만		15	
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, 관련학과 전공 (40점)	미생물 관련분야 경력자	3년 이상	15	경력증명서 (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명시)
		1년 이상 3년 미만	10	
		6개월 이상 1년 미만	5	
	관련분야 자격증	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,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	15	자격증
		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	10	
	관련학과 전공자	미생물 관련학과 전공자	10	졸업증명서
취업취약 계층(10점)	취업취약계층 해당자 [붙임 참조]		10	해당서류 (중복인정 불가)
다자녀 가구(10점)	자녀 3명 이상		10	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국가 유공자 (10점)	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해당자		10	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

※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 “붙임” 참조

※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가점 부여

## [붙임] 취업취약계층 확인 서류

- 1) 저소득층 : 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
- 2)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: 한부모가족증명서
- 3) 고령자(만 55세 이상) :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
- 4)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, 상이군경회원증
- 5)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
- 6) 결혼이주자
  - 국적 취득 전 : 외국인등록증(F2 또는 F-5, F-6비자) 및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
  - 국적 취득 후 :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